

[설명 자료]

#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

(‘23. 10. 4. 시행)

2023. 10.



환경부

Ministry of Environment

#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개요

## 개정 내용

1.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
2.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('28년까지)
3.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
4. 화학물질관리대장은 '구매용도'를 기록하도록 서식 개정

## 시행 시기

1. '23.10.4일 부터 시행
2. 다만, 취급 담당자 교육은 교육자료 개발 등을 고려하여 '25.1.1일 부터 시행

# 1.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

유해화학물질관리자(12종), 기술인력(9종) 추가하여 인정 자격을 통일(총 37종)

## 기존

- ❖ 화공안전 · 화공 · 가스 · 대기관리 · 수질 관리 · 폐기물처리 · 산업위생관리기술사
- ❖ 화공 · 산업안전 · 가스 · 수질환경 · 대기 환경 · 폐기물처리 · 산업위생관리기사
- ❖ 산업안전 · 수질환경 · 대기환경 · 폐기물 처리 · 위험물 · 가스 ·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
- ❖ 가스 · 환경 · 위험물기능사

## 추가

- ❖ (공통 추가)  
- 표면처리기술사 · 기능장 · 산업 기사 · 기능장, 정밀화공기사, 환경위해관리기사, 화학분석기사 · 기능사
- ❖ (관리자) 가스 · 위험물기능장, 화약류제조기사 · 산업기사
- ❖ (기술인력) 유독물취급기능사

※ (근거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별표6 개정

## 2. 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('28년까지)

(기존) '23.12.31일까지



(변경) '28.12.31일까지

###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**기술인력 기준**

- 기술사 또는 기능장
- 기사 + 5년 경력
-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전문교육 이수자
- 석사 + 경력 3년
-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+ 경력 7년

※ (근거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

### 3. ('25.1.1부터 시행) 취급 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

(기존) 취급 전에 16시간 이수



(변경, 택1) 취급 전 16시간 이수 또는  
취급 전 8시간,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수

#### (주의사항)

-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
- **취급전**에는 **대면교육**, 취급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
- '25.1.1일부터 시행하며, 운반자 교육 등은 변경 없음

※ (근거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개정

## 4. 화학물질관리대장 서식 변경

(목적) 판매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, 이를 기록하도록 함

(개선내용) 관리대장 서식의 '용도'를 '구매용도'로 변경

### (주의사항)

- 유해화학물질 판매시에는 반드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판매
- 화학물질관리대장에는 '구매용도'를 구체적으로 기록
- 관리대장은 5년간 기록·보존

※ (근거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